### ESG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1.12.10 개정 2023.12.13 [ESG경영처 ESG총괄부 042-600-8202]

#### 제 1 장 총 최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회사라 한다)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,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 및 권한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회사의 ESG 정책과 ESG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
- 2. 회사의 ESG 경영전략 및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자문
- ② 위원회는 ESG관련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심의 할 수 있다.

####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
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상임이사(경영전략본부장) 1인, 비상임이사 2인 및 민간전문 위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사장이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하고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자,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했한다.
- ③ 민간전문위원은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, 각 후임자가 승계·역 임하다
- 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다.
-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- 1.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
  - 2.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
  - 3. 그 밖에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상정 약건) ①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- 1. FSG 경영 추진계획
- 2. 그 밖에 환경, 사회,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 등 위원장이 심의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 사항
- ②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- 1. ESG 추진과제 이행 결과
- 2. 자체 ESG 평가 결과 및 ESG 개선 사항
- 3. 주요 비재무 이슈 사항 및 대응 방안
- 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제 3 장 회 의

- 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정례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 정례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 할 수 있다. 다만,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 회의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 정기회의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7조(소집 및 통지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위원회를 소집함 수 있다.
- ②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 함 수 있다.
-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는 [별지서식 제1호]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.
-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, 장소와 목적이 명시된 [별지서식 제2호]의 ESG 위원회 소집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한다.
- 제8조(의결 방법)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.[개정 2023.12.13.]
-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·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③ 간사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,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제9조(회의록)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[별지서식 제3호]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.
- 1.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
- 2.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

- 3. 심의대상, 발언요지, 심의결과
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10조(통지의무)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간사는 의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계부서에 [별지서식 제4호]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#### 제 4 장 보 칙

- 제12조(위원회 지원) 회사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, 인력, 예산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당의 지급)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관련 민간전문위원에게 자문 등을 받을 경우 회사가 허용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기타 세부사항)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운영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【별지서식 제1호】 (제6조 제4항 관련)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	20 년 월 일
년 월 일	(제 회)

의 결 사 항

## ESG위원회 안건명

제	안	자	이 사 000 (00000처 소관)
제 인	<u></u> 년 월	월 일	2000년 00월 00일

## 1. 제안사유

### 2. 의결주문

'00년도 제0차 ESG위원회 소집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

가. 일 시 :

나. 장 소 :

다. 회의 목적사항

<의결사항 >

•

라. 기타사항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나. 예산조치 :

【별지서식 제2호】

## ESG위원회 소집통지서

귀하

ESG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00차 ESG위원회를 소집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일 시 :

2. 장 소:

3. 심의안건 :

4. 내 용 : 별첨

20 년 월 일

ESG위원회 위원장

# ESG위원회 회의록

### 1. 회의 개요

회의일시	2	0 년	월	일	00:00 ~ 00:00	
회의장소						
참석위원	명					
불참위원	명					
간 사						

### 2. 안건 처리결과

#### □ 심의결과

의안번호	안 건 명	심의결과
제 호	0	원안의결, 수정의결, 조건부의결, 부결, 심의유보

□ 심의결과(요지)

### 3. 회의내용

#### 【별지서식 제4호】

# 제 회 ESG위원회 의결서

일	시			
위 원	장	출 석 위 원	원	
제 출	자	간 시	4	

년도 제 회 ESG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	ਹ <b>ੀ</b> .		부	의 사 항		ਨੀ ਹੀ	결 과
소 관		번호		건 명		의 의	결 과
	직	위	위 원 장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
의	성 명						
	날 (서						
결	직	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
	성	명					
자	날 ( 서						
의 결 일 자				의 결 장 소		비고	

#### 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위 원 명 : (인)

연번	진 단 내 용	체크사항		
1	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 )	아니오 ( )	
2	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예 ( )	아니오 ( )	
3	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 등의 당사자이다.	예 ( )	아니오 ( )	
4	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( )	아니오	
5	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 )	아니오	
6	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, 단체,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 )	아니오 ( )	
7	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( )	아니오 ( )	

\* '예'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직무윤리 서약서

직위 : ESG위원회 위원

성명: (인)

상기 본인은 ESG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
- 2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3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·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6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7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8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행위 금지
- 9.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(서명)